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안미자 의원)

의안 번호	24-17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2. .
발의자 : 강동오, 고병준, 권영숙,
권인순, 안미자, 차해영,
최은하, 한선미

1. 개정이유

출자·출연 기관의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출자·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 법조문 정비(안 제14조)
- 나.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시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다.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3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불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2. 15. ~ 2. 2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**마포구의회**”를 “**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**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**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3**”을 “**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**”로, “**경영지도법인**”을 “**지방공기업평가원**”으로 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,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평가의 활용) ①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정명령 등)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자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<u>마포구의회</u>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4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,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「<u>지방공기업법</u>」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<u>경영지도법인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(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지방공기업법</u>」 제78조의4- ----- <u>지방공기업평가원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15조(평가의 활용) ① 구청장이

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6조(시정명령 등) ① 구청장은

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 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

제15조 · 제16조 (생략)

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
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
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 · 점
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
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장에게 보
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 · 제18조 (현행 제15조 및 제
16조와 같음)

【관 계 법령】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8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31조(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)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
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예산정책과 박병제
연락처	02-3153-8064